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에 대한 考察

金 龍 善

I. 머리말

II. 埋葬地의 分布

III. 埋葬地의 變遷

IV. 〈族墳〉의 形成

V. 맺는 말

I. 머리말

필자는 高麗時代의 墓誌銘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동안, 기존의 문헌자료에서는 거의 대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기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喪禮에 관한 기사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墓誌銘에는 한 인물의 出自·履歷·家族關係 등의 기사와 아울러, 사망에서 장례 및 매장에 이르기까지의 기사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後者和 같은 喪禮에 관한 기사는, 墓誌銘이라고 하는 자료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 기록 속에는 당연히 언급해 두어야 할 사항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高麗史』와 같은 일반 문헌자료에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그동안 高麗時代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喪禮에 대한 문제는, 家族이나 親族制度 연구를 위한 服制의 문제나, 墳墓의 축조 및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사적인 관심을 제외하고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¹⁾ 그러나 喪禮에 대한 절차나 관습 가운데에는 정

1) 高麗時代의 服制에 관한 연구업적 가운데 주요한 몇 개를 꼽으면 다음과 같다.

①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大出版部, 1969

② 李弼相, 「高麗時代 服制의 研究」, 『韓國史論』 2, 1975.

③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

치적·경제적 문제와 아울러 신분·계급과 같은 사회적 문제, 死生觀·宗教觀과 같은 사상적 문제, 墳墓의 造成에 관한 과학기술 및 미술사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²⁾ 그러므로 高麗時代의 社會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는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高麗時代의 喪禮 문제 가운데, 특히 埋葬地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즉 당시의 支配層을 중심으로 하여 死後 그들은 墓地를 어디에 정하였으며,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³⁾ 모쪼록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高麗時代의 社會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II. 埋葬地의 分布

필자는 現存하는 高麗 墓誌銘이나 『高麗史』 등의 기록을 통하여 모두

學位論文, 1988.

高麗時代의 墳墓에 대한 연구로는

① 김원룡, 『한국의 고분』, 교양국사총서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pp. 190~201.

② 金正基, 『韓國建築史概說』(『建築文化』 1988년 4월호 및 5월호에 第 44·45 回分으로 연재), 1988.

③ 기타 각 대학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발굴보고서(註(22) 참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 喪禮에 관한 최근의 업적으로는

① 鄭吉子,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學』 7, 1983.

② 鄭吉子, 「高麗 貴族의 組立式 石棺과 그 線刻畫 研究」, 『歷史學報』 108, 1985.

를 들 수 있다.

2) 김원룡, 위의 책, pp. 3~4.

3) 본고에서는 특히 墓誌銘 자료를 많이 이용하였다. 그런데 高麗시대에는 支配階層만이 墓誌銘을 남겼기 때문에 자연히 이들에게 국한시켜 고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아울러 本稿에서의 支配層이라고 함은, 官品을 가진 中央 官과 僧侶 등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을 지칭하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

263 개소의 고려 지배층의 매장지를 조사해 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이 墓所의 위치를 확인하고 분류하였다.

첫째, 매장지의 地名을 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郡·縣의 단위로 하였다. 예컨대

葬于開城府牛峰郡押實村之南原(李公壽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02)

과 같은 경우, 그 葬地를 開城府가 아닌 牛峰郡으로 분류해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행정명칭이 중간에 바뀐 경우가 있더라도 모두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해 두었다.⁵⁾

둘째, 原資料에는 지역의 명칭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록을 통하여 郡·縣 단위의 소속지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지명을 따라 분류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京北九龍山東南崗(李隴西公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844)

과 같은 九龍山의 경우, 『高麗史』地理志에는

牛峰郡…有九龍山(『高麗史』56, 地理 1 王京 開城府)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 위치는 開城府가 아닌 牛峰郡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 4) 현재 전해지는 高麗墓誌銘의 기록을 통하여 260 개소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高麗史』를 통하여 3 개소를 찾아내었다. 263 개의 매장지 가운데 승려의 것은 15, 女姓의 것은 41 개소로 조사되었다.
- 5) 예컨대 貞州의 경우 睿宗 3년에 昇天府(혹은 承天府)로, 忠宣王 2년에는 海豐郡으로 개칭되었으나, 모두 貞州로 통일시켜 분류하였다. 또한 表記上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필자가 임의로 고증하여 분류하였다. 예컨대 毅宗 6년(1152)에 사망한 朴瑋의 경우 그의 葬地는 「端州馬坵村」이라고 되어 있다(朴瑋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31). 『高麗史』58 地理 3, 東界에 보면 禰王 8년(1382), 福州을 端州로 개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朴瑋의 葬地가 있는 端州는 福州가 아닌 다른 지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崔時允 墓誌銘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長端> 대신 <長端>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韓國金石文追補』 p. 112), 朴瑋의 葬地인 「端州」도 「長端」, 즉 長端이 아닌가 여겨진다.

셋째 首都인 開城의 경우 屬郡·屬縣은 모두 독립된 명칭에 따라 분리시켰으나,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開城>으로 통일시켰다. 예컨대

① 開舊塚 奉徙新墳 擇松岳北面微音大利向座 以辛卯八月六日甲辰 改葬于茲(柳邦憲 墓誌銘, 『朝鮮金石總覽』上 p. 267)

② 卜葬于帝京西南□開城府埒地山(張文緯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97)

③ 葬地開城縣大平院之西原(權廉 墓誌銘, 『牧隱集』 16)

과 같은 경우 松岳·開城府·開城縣 등으로 서로 다르게 명칭이 표기되어 있으나, 이들을 모두 開城으로 통일시켜 분류한 것이다.

넷째 위의 史料①에서 보듯이 원래의 葬地에서 후일 移葬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최장 매장지를 그 墓地의 위치로 간주하였다.⁶⁾ 그리고 墓所의 地名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으나 그 所屬 郡·縣을 전혀 비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未詳으로 처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 확인된 埋葬地의 위치를 지역별·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의 <表 1>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 分布>와 같다.

Ⅲ. 埋葬地의 變遷

<表 1>은 시기를 高麗 前期(光宗~毅宗), 武人執權期(明宗~元宗), 高麗 後期(忠烈王~忠定王), 高麗 末期(恭愍王~恭讓王)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

6) 여기서 移葬이라고 함은 火葬 뒤 유골을 임시로 奉安하였다가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시켰으며, 분묘를 완전히 축조하였다가 뒤에 파기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간 사례만을 의미한다. 전체 263개 사례 가운데 移葬된 것은 4개로서 (柳邦憲, 崔士威, 崔思諷, 朴景仁의 분묘), 이 중 3개는 같은 開城 지방에서 이장하였으나, 朴景仁의 분묘는 松林縣에서 牛峰縣으로 이장되었다(개별 전거 생략). 한편 高麗 후기에 사망한 洪奎(1242~1316)의 경우, 葬地가 德水縣으로 되어 있으나, 23년 뒤 사망한 그의 妻 金氏 墓誌銘에는 洪奎의 墓誌가 松林이라고 되어있어 移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洪奎의 경우 본고에서는 德水縣으로 처리하였다.

〈表 1〉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 分布〉

地 名	高麗前期	武人政權期	高麗後期	高麗末期	時期未詳	合 計
開城	43	28	13	5	2	91
松林	19	13	26	4		62
長湍	6	3	2			11
臨津	2	1	2	2		7
臨江	6					6
江陰	4					4
德水		1	7	3		11
貞州	4		1			5
麻田			1			1
牛峰	12	5	4	1		22
江華		7				7
水原		1	1			2
咸陽		1				1
禮安			1			1
山陽			1			1
錦州			2	2		4
京山			1	1		2
驪興				2		2
順興				1		1
完山				1		1
德豐				1		1
守山				1		1
楊州				2		2
未詳	4	6	7			17
合 計	100	66	69	26	2	263

한 것이다. 이 〈表 1〉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기에 따라 지배층들의 매장지는 주로 어디에 정해졌으며,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高麗 前期

高麗 前期에는 未詳地 4 개소를 제외한 96 개소의 매장지가 확인되었다.

이들의 위치는 <表 1>에서 보듯이 開城·松林·長湍·臨津·臨江·江陰·貞州·牛峰의 8개 지역에 걸쳐있다. 즉 <表 1>의 다른 시기의 매장지와 비교하여 곧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매장지의 분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8개 지명들은 모두가 高麗시대의 京畿지방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高麗史』地理志에는

- ① (成宗)十四年爲開城府管赤縣六·畿縣七(『高麗史』56 地理 1 王京 開城府)
 ② 顯宗九年罷府 置縣令管貞州·德水·江陰三縣 又長湍縣令管松林·臨津·兎山·臨江·積城·坡平·麻田七縣 俱直隸尙書都省 謂之京畿(위와 같음)

라고 하여, 成宗代の 赤縣·畿縣을 거쳐 顯宗 9년에 「京畿」가 형성되었으며, 그에는 開城縣과 長湍縣등 12개의 縣이 소속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京畿 지역에

文宗十六年 復知開城府事 都省所掌十一縣皆屬焉 又割西海道平州任內牛峰郡以隸之(위와 같음)

라는 기사에서와 같이 文宗대에 平州 관할이던 牛峰郡이 새로이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京畿는 그후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高麗末期까지 거의 그대로 존속되어 갔다. 즉

恭讓王二年 分京畿爲左右道 以長湍·臨江·兎山·臨津·松林·麻田·積城·坡平爲左道 開城·江陰·海豐(貞州)·德水·牛峰爲右道 又依文宗舊制(위와 같음)

라고 하는 恭讓王 代의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高麗史』地理志에 나오는 이러한 京畿의 행정구역과 <表 1>에 나오는 지명을 대조하여 금방 알 수 있듯이, 高麗 前期의 지배층들은 그

7) 京畿지방의 연혁이나 역사적 변천에 대하여서는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 『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7. 참고

들의 墓地를 모두 京畿 지방내에 국한시켜 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볼 때 하나의 원칙으로까지 굳어졌던 것이 아니었나 여기게 한다.

즉 첫째로, 이 시기의 귀족들은 開城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그들의 최종 매장지를 반드시 京畿지역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세 경우를 보기로 하자.

① (崔時允)卒于任實 皇統五年(仁宗 23, 1145)十一月初七日也…君婦張氏隨君赴所任 先公一年卒 子宗夫赴喪 拾遺骨昇至京師 置于城外天台寺…遂以皇統六年十月十八日甲寅 合葬于長湍縣西北山之南麓(崔時允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12)

② (劉邦儀)…在戊辰歲(毅宗 2, 1148)出爲三和縣令 明年己巳六月 以疾卒于官…以其喪歸于京 以是年九月十八日 葬于松林縣地(劉邦儀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17)

③ 亡人喬桐縣君高氏女者 至丁丑年(毅宗 11, 1157)隨夫至靈岳郡使 噫 其年十一月十五日□忽中風疾 半身不遂 三年之間 勞困尤甚 至庚辰年(毅宗 14, 1160)三月十一日 婦年六十二 己卯 在任物化 葬焚于郡之東北隅法藏寺東山麓 拾骨還京…值壬午年(毅宗 16, 1162)五月十三日 葬骨于弘護寺南山之麓(田起 妻 高氏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57)

이 세 기록은 모두 지방에서 사망한 인물들에 관한 것이다. 먼저 ①의 기사를 보면 崔時允과 그의 妻는 모두 부임지인 任實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死後 京畿지방인 長湍縣에 合葬되었다. ②의 劉邦儀 역시 三和縣令으로 재임 중 사망하였는데, 葬地는 京畿의 松林縣으로 정해졌다. ③의 田起 妻 高氏도 地方官인 夫君을 따라 靈岳에 머물다가 得病하여 사망하였는데, 火葬은 현지에서 하였으나 최종 매장지는 開城의 弘護寺南山 기슭에 마련되었다.⁸⁾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세가지의 사례들을 통하여

8) 『高麗史』 10 宣宗 世家 10년 5월 庚子 條에는
創弘護寺于城東

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으므로, 弘護寺의 위치가 開城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듯이 高麗 前期의 지배층들은 死亡地 혹은 火葬地의 소재와 관련 없이, 최종 매장지는 모두 京畿지역에 정하였던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鄉吏 혹은 鄉吏子孫들의 경우, 鄉吏들은 그 출신지역에 매장되었으나, 그들이 일단 중앙으로 진출하여 중앙의 官吏라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면 그들의 매장지 역시 京畿지역으로 정해졌다. 그러한 사례로서 먼저 崔婁伯 가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① 崔婁伯 水原吏尙叢之子 尙叢獵爲虎所害 婁伯時年十五 欲捕虎 母止之 婁伯曰 父讎可不報乎 即荷斧跡虎 虎既食飽臥 婁伯直前叱曰 汝食吾父 吾當食汝 虎乃掉尾俛伏 遂斫而割其腹 盛虎肉於瓮埋川中 取父骸肉安於器 遂葬弘法山西 … (婁伯) 登第 毅宗朝 累遷起居舍人 (『高麗史』 121, 孝友 崔婁伯 傳)

崔婁伯은 위 기사에서 보듯이 水原의 鄉吏였으며 虎患을 당한 그의 父 崔尙叢를 弘法山의 서쪽에 매장하였다. 이 弘法山은 『新增東國輿地勝覽』 9 水原都護府의 山川 條 및 塚墓 條에는

① 弘法山 在府西
五里

② 崔尙叢墓 在弘
法山

이라고 나타나고 있어, 崔尙叢의 묘소가 水原지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鄉吏의 子孫인 崔婁伯은 그후 위 사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科擧에 及第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葬地는

(崔婁伯) 卒于家 移殯于廣□寺 越是月十八日庚午 葬于大德山之麓(崔婁伯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09)

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大德山 기슭, 즉 京畿의 松林縣 지방으로 정해졌던 것이다.⁹⁾

9) 大德山의 위치에 대하여

松林縣地大德山(崔瑞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214)

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음은 역시 鄉吏 가문에 속하였던 鄭穆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① (鄭穆) 本東萊人 大父諱之原爲郡長 父諱文道或爲郡長 公十八歲 辭親遊學 … 咸雍二年丙午(文宗 20, 1066) 擧中于成均 … (咸雍八年) 春 聖考文宗親較士于廣殿 … 賜公以丙第 拜秘書省校書郎 … (肅宗 10, 1105) 五月乙未 卒于龍興寺德海院 是月辛酉 依佛制火葬于寺之西崗 … 庚午拾骨假安于帝京東北安佛寺 … 歸葬于弘護寺西南原(金龍善, 鄭穆墓誌銘, 『新資料 高麗墓誌銘 17 點』, 『歷史學報』 117, 1988, pp. 140~142)

② (鄭沆) 考諱穆攝大府卿 祖諱文道 曾祖諱之遠 皆爲本郡戶長 … 公 … 二十三 擧進士及第 … 卒實紹興六年(仁宗 14, 1136) 十一月二十七日辛卯也 … 十二月十三日 火其柩于京城南彰信寺南山之麓 收遺骸 權厝京北山寂照佛寺 至明年閏十月十二日庚午 遷葬于松林山丁向之原(鄭沆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p. 99~100)

이 ①과 ②의 기사에서 보듯이 鄭穆은 父·祖가 東萊지방의 戶長이었던, 따라서 鄉吏의 子孫이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18세에 上京하여 文宗代에 科擧에 합격함으로써 중앙의 官리가 되었다. 그리고 死後에는 鄉里가 아닌 開城의 弘護寺 西南原에 매장되었던 것이다. 그의 子 鄭沆 역시 ②에서 보듯이 科擧에 급제하였는데, 그 또한 死後 京畿의 松林縣에 묻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崔襄伯과 鄭穆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鄉吏들은 그들의 본거지에 그대로 매장되었을 터이지만 일단 중앙으로 진출하여 지배계층의 신분을 획득한 뒤에는, 그들의 葬地는 본거지를 벗어나 모두 京畿지역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그러므로 高麗 前期에 있어서 他地方에서 사망하거나, 鄉吏출신이었거나를 막론하고 중앙의 官직을 가지고 있는 고려의 지배층들은 모두 王京인 開城을 포함한 京畿 지역에 매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

10) 光宗代에 鄉貢出身으로 중앙의 官리가 되고 死後 開城에 매장된 柳邦憲의 例에서 보는 것처럼 (柳邦憲 墓誌銘, 『朝鮮金石總覽』 上, pp. 265~267), 地方출신 인물들이 死後 개성에 매장되는 현상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 좋을 듯하다.

11) 牛峰의 경우, 원래는 平州에 소속되었다가 文宗 16년에 京畿에 편입되었다. 牛峰에 처음으로 매장된 인물은 文宗 3년에 사망한 李驥西公이다(『韓國金石文追補』 pp. 83~84 참조).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무시하여도 좋지않을까 여겨진다.

2. 武人執權期

이 시기에는 <表 1>에서 보듯이 未詳 6 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60 군데의 매장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분포지는 京畿 51 개소, 江華 7 개소 그리고 水原과 咸陽이 각각 1 개소 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京畿의 경우, 이 시기의 확인된 60 개 중 51 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방이 지배계층의 매장지로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前期에서와 마찬가지로 他地에서 사망하거나, 鄉吏출신일지라도 최후 매장지는 京畿 지역으로 정해졌음은 다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吳元卿)…戊戌年(明宗 8, 1178) 權務政出於昇平郡守 至庚子年(明宗 10, 1180) 冬十月二十有七日 以疾卒于此郡 取是年十一月十三日 火槨于郡南之麓 十八日移骨於碧泉寺 是月二十有一日 昇骨離郡 二十五日□義安郡 安骨于冷泉寺 越十二月十八日 長子允臧□骨出郡 於今年正月初三日 入京師 權安于城東門內神岳寺 越至四月十有六日 藏骨于歸法山麓(吳元卿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73)

② (任忠贊)…卒于於□旅 殯于金吾□□□月八日□□□□北奉靈寺南山□□而葬之(任忠贊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78)

즉 ①의 吳元卿의 경우 그는 昇平郡守로 재임 중 현지에서 사망하였는데, 그곳에서 바로 화장되었으나, 開城의 歸法寺 山麓에 안장되었다. 또 ②의 任忠贊의 경우 他 지방에서 사망하였으나 매장지는 역시 開城의 奉靈寺로 정해졌던 것이다.¹²⁾

한편 鄉吏출신으로 중앙의 관리가 된 인물로는

① (李文鐸)…皇考純爲舉子 早逝 贈都梁丞 祖周佐·曾祖漢佐 俱仕爲縣長…先皇考而□繼母李本京師衣冠之子 公早□母落魄不羈 年十七入京師始就學…至丙寅歲(仁宗 24, 1146) 以上舍第二人 擢丙第…(明宗 11, 1181) 葬于城南天德山西南麓(李文鐸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p. 169~171)

② 公諱子清 寧州人也 曾祖公夫郎將 祖仁厚戶長 考若規戶長 公才兼文武 早□鄉

12) 『高麗史』에는 移御奉靈寺 卽鄭誠祝靈所(『高麗史』18, 毅宗世家 19年 4月)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로 미루어 奉靈寺의 위치를 開城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邑簿書之役 越天德二年(毅宗 5, 1151) 春 兵馬使入本州 次弟監選至於公以才□拔
 萃改差爲精勇… 承安三年(神宗 1, 1198) 冬十二月二十二日 癘疾終于家 □葬于靈
 □山西 俄改卜宅安骨 銘曰 承安之年 維頁之始 藏骨於何 九龍山裏(宋子清 墓誌銘,
 『朝鮮金石總覽』上 p. 425)

라는 두 가지 사례를 꼽을 수 있다. ①의李文鐸은 曾祖·祖가 모두 縣의 鄉吏였으며, 父는 「擧子」라고 하였으므로 科擧에 급제한 듯하나 早死하였다. 따라서 鄉里에 남아있었던李文鐸은 17세에 入京하고, 이후 科擧에 합격함으로써 지배계층에 편입되었다가 死後 開城의 天德山에 안장되었던 것이다. ②의 宋子清도 父·祖가 모두 鄉吏였으며, 그 자신 鄉吏로서 選軍되어 중앙의 武班으로 진출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매장지는 牛峰縣의 九龍山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武人執權 기간에도 대다수의 지배계층은 그들의 매장지로서 京畿지역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江華친도 이후의 시기에 江華지방에 매장된 7개의 사례도 넓은 의미에서는 京畿지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武人政權은 高宗 19년(1232) 江華로 수도를 옮기었으며, 高宗 30년 8월에는 世祖·太祖의 陵도 江華로 옮긴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망한 고려 지배계층들도 그들의 매장지를 江華에 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¹³⁾

이렇듯 대다수의 지배계층들은 武人執權期에도 그들의 매장지를 京畿지역에 정하였지만, 前期에서와는 다른 양상이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1>에서 보듯이 開城·京畿가 아닌 지역에도 葬地를 정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먼저 咸陽에 묻힌 인물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朴康壽) 晋州咸陽人也 曾祖戶長諱宗信 祖興威衛別將延□ 外祖戶長公 姓朴 名英叔 父追封戶長軍尹諱德□□□□於天德四年(毅宗 6, 1152) 始拜諱□□縱心之

13) <表 1>에 제시한 7명의 江華 지역 매장자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인물은 高宗 21년(1234)에 사망한 金就彌이며, 제일 늦게 나오는 인물은 高宗 44년(1257)에 사망한 崔沆이다.

年拜監門衛大將軍致仕…今歲忽縣車之樂退□故鄉知足之□也…今年(神宗 3, 1200)三月三十□□□葬□四月二十一日丙午葬于咸陽□□□哀也(閔賢九, 朴康壽墓誌銘, 『歷史學研究』 5, 1974, p. 66)

즉 朴康壽는 咸陽 지방의 鄉吏 가문출신으로서, 毅宗 6년에 38세의 나이로 벼슬하기 시작하여, 70세인 神宗 3년(1200)에 大將軍職으로 致仕한 뒤 고향으로 退居하고 사망하여, 마침내 그곳에 묻히게 된 것이다.

다음 水原지방에 묻힌 梁宅椿의 경우를 보자.

(梁宅椿)…垂耳順 調溫水郡監務初筮仕…甲寅(高宗 41, 1254)夏四月七月…而逝 時年八十三也 其公悲泣 奉體浴火 收骨 是年六月十四日 葬于水陽山之麓(許興植, 梁宅椿 墓誌銘, 『高麗佛教史研究』 p. 691)

이 梁宅椿은 祖上의 이름과 관직은 알 수 없으나 鄉吏출신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 그는 武人政權이 성립된 뒤인 明宗 2년에 태어나서, 60세에 溫水郡監務職을 역임함으로써 관리가 되었던 것인데, 83세로 사망한 뒤 水原지방의 水陽山에 묻혔다.¹⁵⁾

그러므로 朴康壽와 梁宅椿의 경우에서 보듯이, 武人政權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특히 鄉吏로서 증상으로 진출한 인물들이 京畿가 아닌 다른 지방에 葬地를 쓰기 시작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表 2>에서 보듯이 아주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前期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시기에 나타나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하겠다.

3. 高麗 後期

開城이나 京畿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매장지를 정하는 경향은 高麗 後期에 들어서서 더욱 확대되어 갔다. 즉 <表 1>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확인된 매장지 63개소 가운데 京畿는 56개소, 지방은 7개소가 되기 때문이

14) 許興植, 「圓悟國師의 父 梁宅椿 墓誌」, 『高麗佛教史研究』, 1986, p. 696.

15) 許興植, 위의 책, p. 690. 이 지역은 오늘날의 京畿道 華城郡 東灘面 新里에 해당한다.

다. 동시에 京畿 지역 내에서도 開城보다 松林·德水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의 7개 지역도 水原 2, 慶尙道の 禮安 1, 山陽(尙州) 1, 京山府(星州) 1, 忠淸道の 錦州 2개소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매장지의 지역적 분포가 훨씬 다양해졌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地方에 墓所를 정한 인물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먼저 金方慶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公姓金 諱方慶 永嘉郡人也 曾祖司戶義和 … 祖掌冶署丞 … 敏誠 … 考正議大夫兵部尙書 … 孝印 … 至大德四年(忠烈王 26, 1300) 秋八月十有六日 因疾而薨于 柘木洞鷲溪里 以九月初三日 歸葬于禮安西山之麓 從遺教也(金龍善, 金方慶 墓誌銘, 『新資料高麗 墓誌銘 17點』, 『歷史學報』 117, 1988, pp. 152~153)

즉 金方慶은 開城의 柘木洞 鷲溪里에서 사망하였다.¹⁶⁾ 매장지는 慶尙道 禮安 지방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은 그의 특별한 遺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¹⁷⁾ 위의 사료에서 보듯이 曾祖가 司戶였다고 하므로, 金方慶의 가문은 鄉吏계층으로부터 立身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高麗 前期와 武人執權期 동안 他地에서 사망하더라도 매장지는 굳이 京畿 지역에 정하려던 보편적인 현상과 정반대의 현상이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믿어진다.¹⁸⁾

이번에는 그 자신 鄉吏출신으로서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다가 地方에 매장된 인물을 보기로 하자. 먼저 李兆年의 경우이다.

16) 『高麗史』에는

己巳鷲溪里百餘家火 丁未 地藏坊三百餘家火 己酉 槐洞里火(『高麗史』 35, 忠肅王 世家 11년 3월)

이라고 하여 鷲溪里가 나온다. 이것과 金方慶이 사망한 鷲溪里는 같은 지명이 아닌가 여겨지며, 그 위치도 開城지역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17) 『高麗史』의 列傳 기록에는

(忠烈王)二十六年 以病卒 年八十九 … 遺命 歸葬安東 時用事者惡之 遂沮禮葬 後王悔之(『高麗史』 104 金方慶 傳)

라는 기사가 나온다.

18) 그러나 金方慶의 子인 金恂과, 金恂의 子인 金永暉은 父·祖와는 달리 京畿의 德水縣에 매장되었다(金龍善, 『新資料 高麗墓誌銘 17點』, 『歷史學報』 117, 1988의 pp. 155~159의 金恂 墓誌銘 및 金永暉 참조)

公姓李氏諱兆年 字元老 京山府龍山里人也 曾祖諱教文 祖諱得禧 考諱長庚 皆爲府吏 … 公年十七以鄉貢進士登第丙科 調安南府書記 … 歸而居鄉十三年 … 至正三年癸未(忠惠王 復位 4, 1343) 五月己巳卒 葬以其月辛卯 墓在其鄉之釜洞(李兆年墓誌銘, 『益齋亂藁』 7)

李兆年の 가문은, 위 사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代代로 鄉吏職을 세습하여 오다가, 李兆年이 鄉貢出身으로 科擧에 급제함으로써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¹⁹⁾ 그러나 관직에서 은퇴한 뒤 그는 鄉里로 내려왔으며, 그곳에서 사망하고 매장되었다.

다음은 金得培의 父 金祿의 경우이다.

金得培 尙州人 … 父 祿 仕至判典醫 初州吏金祚有女曰萬宮 … 適州吏金鎰生祿 … 得培登第 補藝文檢閱 … (恭愍 11) 逃匿山陽縣先塋側…(『高麗史』 113 安裕 傳附 金得培 傳)

金祿은 위 사료에서 보듯이 父와 外祖가 모두 州吏였다. 그런데 金祿은 判典醫職을 역임하였다고 하므로, 그는 鄉吏 子孫으로서 중앙에 진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金祿도 死後 山陽縣에 그의 墓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따라서 그 역시 앞서의 李兆年과 마찬가지로 鄉吏子弟로서 중앙에 진출하였다가, 致仕 후 落鄉하여 그대로 그곳에 묻힌 인물이었다고 보아 좋지 않을까 한다.

다음에는 水原에 묻힌 趙公卓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公諱公卓 高麗淳昌郡人 後從姻婭 居水原府之龍城縣 年六十四 延祐己未(忠肅王 6, 1319) 卒于家 因葬之 … 先世皆隱不仕 … 墓在縣北古城山麓(趙公卓 墓誌記, 稼亭集』 4)

이에 따르면 趙公卓은 원래 淳昌郡人이었다고 하나 조상의 성명과 관직

19) 李兆年の 가문에 대하여서는 高惠玲, 「李仁任政權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91, 1981, pp.2~8 참조.

20) 당시의 山陽縣은 慶尙道 尙州牧의 屬縣이었다. 『高麗史』 57 地理 2 尙州牧 山陽縣 條 참조.

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先世皆隱不仕」라고 하였으므로, 어찌면 淳昌지방의 土豪 내지는 鄉吏계층 출신의 인물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결혼한 뒤 妻家가 있는 水原의 龍城縣으로 이주해 왔으며, 중앙의 관직을 역임하고 死後 龍城縣의 古城山에 매장되었다.

이상에서와 같은 李兆年·金祿·趙公阜의 경우에서 보듯이 高麗 後期, 특히 14세기의 忠肅王 代에 접어들면서부터 고려의 지배층들은 京畿지방 이외에도 다른 지역, 즉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墓所를 정하는 사례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주로 鄉吏 계층에서 부터 立身한 인물들이 주도해갔지만, 金方慶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앙 귀족계층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인물도 나타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高麗 末期

恭愍王 이후의 高麗 末期가 되면 지배층의 매장지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表 1>에 의하면 이 시기의 위치가 확인된 25개의 매장지 가운데 15개가 京畿지역에 소재하며, 나머지 10개는 다른 지방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지방 소재 매장지의 지역적 분포도 楊州·驪興·順興·守山·德豊(洪州)·錦州·完山으로 나타나, 오늘날의 京畿·慶尙·全羅·忠淸지역에 골고루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포를 보더라도 이 시기에는 지배계층들이 京畿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墓所를 정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高麗 末期가 되면서 地方에 묘소를 정한 지배계층들은 물론 鄉吏로부터 立身해온 부류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첫번째는 중앙 귀족 가문 출신의 인물로서 致仕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 末年을 보내다가 死後 現地에 매장되는 인물들을 꼽을 수 있다.

① (崔宰)祖...正臣左右衛中郎將 (父)得祿通憲大夫選部典書上護軍致仕 ... (崔

宰) 甲寅年(恭愍王 23, 1374)春 以老乞歸鄉 … 秋九月玄陵薨 公會哭盡哀 今上拜使商議 公固辭 請還鄉 封完山君 … 十月己巳卒 享年七十六 十二月壬寅 葬于居第之密直副東坎麓 理命也(崔宰 墓誌銘, 『牧隱集』 15)

② (柳淑) 瑞州人也 曰公器承奉郎閣門祇候 曰宏贈僉議評理上護軍 曰成桂通議大夫大常卿知茶房事 公之三代也 … (柳淑) 乙巳(恭愍王 14, 1365) 封瑞寧君 … 其秋乞歸田里 卜築伊山縣之伽耶山 優遊以自老 … 歲戊申(恭愍 17, 1368) (辛) 屯之浸潤既久 其計得行 縊公于靈光郡 十二月二十一日也 … 歲壬子(恭愍 21, 1372) 正月十一日以 禮葬于德豐縣加也洞(柳淑 墓誌銘, 『牧隱集』 18)

①의 崔宰는 鄉吏 출신은 아니지만 은퇴 후, 고향인 完山으로 落鄉하여 그곳에서 사망하고 매장되었다. ②의 柳淑 역시 先代부터 관직을 역임한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瑞寧君에 封해졌으나 落鄉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辛屯과 갈등이 생겨 靈光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死後 고향인 德豐縣 加耶山에 埋葬되었다.

이러한 柳淑과 崔宰의 경우에서와 같이, 先代부터 귀족의 신분을 가진 인물들이 開城이나 京畿에 매장되지 않고 다른 지방에 매장되는 현상이 高麗 後期의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 경우는 紅巾賊의 침입 등 당시 국내정세가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開京을 벗어나 지방으로 피신하였다가, 끝내 還京하지 않고 地方에서 사망하고 매장된 경우이다.

① 夫人姓金氏 彥陽郡人 高祖諱就曷 … 曾祖諱佺 … 祖諱聃 … 父諱倫 … 母崔氏 … 文憲公諱冲十三世孫 … 年十三歸閔氏 … 避辛丑(恭愍 10, 1361) 紅賊于嶺南 還居驪興歲甲寅(恭愍 23, 1374) 秋九月十九日 以病卒 年七十三歲也 以其年十二月十五日 葬于郡南鉢山之西(閔思平 妻 金氏 墓誌銘, 『牧隱集』 16)

② 今年(禡王代) 閏五月甲辰 葬其(金九容)母驪興郡夫人閔氏于祖母金氏之塋 直其西十數步 … (閔) 思平其考也 … (金) 倫其外祖也 … 辛丑多避賊南遷 奉母以行 母安焉如在室中 其後居驪興十有餘年 … 五月癸巳以病歿 年五十六(金鼎 妻 閔氏 墓誌銘, 『牧隱集』 19)

③ 夫人金氏 光州人也 … 夫人 至正辛丑 與大匡公 避兵密城 因居焉 年七十三 卒于洪武甲寅(恭愍 23, 1374) 八月乙亥 其月辛丑 葬于守山縣九明山(朴允文 妻 金氏 墓誌銘, 『圃隱集』 續 1)

이들은 모두 辛丑年(恭愍 10, 1361), 紅巾賊의 침입 당시 피신하였다가 그대로 夫君의 鄉里에 머물렀으며 死後 그곳에 묻힌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²¹⁾ 그리고 이 세 인물은 모두 여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鄉吏 출신이 아니라 쟁쟁한 高麗 귀족가문의 후예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볼 때, 高麗 末期가 되면서 鄉吏 출신 뿐만이 아니라 당당한 貴族의 후예들도 京畿지역과 아울러 전국 어디에나 묘소를 정착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려시대 지배층의 매장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²²⁾

21) 그러나 閔思平의 葬地는 그의 妻와는 달리 松林縣의 大德山에 塋해졌다(閔思平 墓誌銘, 『齋亭集』 3)

22) 開城·京畿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高麗시대의 분묘로서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것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地 域	時 期	被葬者	參考事項	典 據
晉州 平居洞	1079.1165.1215.1228의 紀年	大相職등 역임	紀年銘文 이 있음	金元龍, 「晉州 平居洞 紀年 高麗古墳群」, 『美術資料』 9, 1964
忠州 直洞	11세기말~12세기	유리한 집단		金正基, 「韓國建築史概說」 『建築文化』 44, 45, 1988
安東 西三洞	12세기 초엽	호족출신 귀족	1002~ 1105의 동전출토	安東, 『西三洞壁畫古墳』, 安東大 博物館, 1981
居昌 屯馬里	12~13세기		벽화고분	『居昌 屯馬里壁畫古墳 및 灰 郭墓發掘調査報告』, 文化 財管理局, 1974
驪州 梅龍里	고려말기	귀 인	土墳墓	『驪州 梅龍里 용강골 古墳 群發掘報告書』, 翰林大學 博物館, 1988
驪州 高達部落	고려말-조선초	호족의 무덤	方形石室 墳	『驪州 上橋里 上方下圓石 室墓』, 漢陽大學校 博物館, 1984
釜山 社稷洞	고려시대		청동盒· 청동수저 출토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적 조사보고』 7,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0
철원 내문리	고려시대		돌상자 무덤	양익용, 「철원군 내문리 고려돌상자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5, 1961

이 분묘들의 年代도 고려 전기부터 말기까지에 걸쳐 있으나, 피장자의 신분은

IV. 〈族墳〉의 形成

高麗 支配層의 埋葬地가 初期의 開城·京畿 집중 현상으로부터 武人政權期를 고비로 하여 後期가 되면서 地方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개인 단위로 매장지를 정하였는가, 아니면 가족 혹은 친족단위의 매장지가 존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매장지의 위치 변화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지배층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夫婦의 埋葬地

먼저 夫婦間의 매장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高麗 全時期를 통하여 夫婦 쌍방의 묘소의 위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25개로 조사되었다.

이 사례를 夫婦가 각각 다른 지역에 묻혔는가, 즉 別葬되었는가, 아니면 같은 지역에 附葬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나누고,²³⁾ 이들을 다시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表 2〉〈夫婦의 別葬·附葬〉과 같다.

이 〈表 2〉에서 보듯이 전체 25쌍의 부부 가운데 別葬된 경우가 6쌍, 附葬된 경우가 19쌍으로 나타나 附葬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고려 전기와 무인정권 시기에는 別葬이 3쌍, 附葬이 4쌍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들 분묘가 民墓가 아니라, 호족등 지방의 유력한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지배층」의 분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현재 남아있는 墓誌銘 가운데에서도 이들과 직접 결부되는 것은 없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전기부터 지방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묘의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본고에서의 논지가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한편 紅巾賊의 침입 당시 지방에 피난하였던 金光載는 피난지 高昌縣에서 사망하였으나, 묘소는 德水縣에 위치하고 있다(金光載 墓誌銘, 『牧隱集』17)

23) 엄밀히 말하면 合葬과 附葬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合葬은 같은 墓 안에 함께 묻히는 것이며 附葬은 같은 墓域 內에 墓所를 달리 하여 묻히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附葬이라 合稱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附葬은 같은 墓域에, 別葬은 다른 墓域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表 2〉

〈夫婦의 別葬·附葬〉

時 期	高麗前期	武人執權期	高麗後期	高麗末期	合 計
別 葬	2	1	1	2	6
附 葬	3	1	11	4	19

이나, 후기 이후 말기까지는 別葬 3쌍, 附葬 15쌍으로 나타나 고려후기로 갈수록 別葬보다는 附葬하는 현상이 더욱 보편화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료는 數値를 통해 나타난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

① 公諱公卓 … 延祐己未(忠肅王 6, 1319) 卒于家 而因葬之 夫人金氏封遼陽縣君 以土俗陰陽家法 別葬焉(趙公卓 墓誌記, 『稼亭集』 4)

즉 趙公卓은 土俗陰陽家의 法에 따라 그의 夫人과 같은 墓域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이 別葬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趙公卓보다 조금 앞서 사망한 인물의 기사에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樂浪郡大夫人崔氏 慶州人 … 文貞公金坵之妻 … 文貞公先卒 寡居三十餘年 … 以至大二年(忠宣王 1, 1309) 七月四日 卒於泥坂闊洞之私第 是月二十二日 葬于椒山 文貞公之墓前 蓋效古人附葬之義也(金坵 妻 崔氏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p. 218~219)

즉 金坵의 妻 崔氏夫人은 앞의 趙公卓 보다 10년 앞서 사망하였는데, 崔氏夫人은 「古人附葬之義」에 따라 그의 夫君과 合葬되었다는 것이다. 이 「古人」之義가 어느 시기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墓誌 속에 이러한 기록을 구태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여 崔氏夫人의 사망 당시부터 夫婦가 合葬되는 사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즉 이 당시—忠肅王代를 전후한 14세기 초반—부터 夫婦가 본격적으로 合葬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土俗陰陽家法에 따라 別葬된 趙公卓과 古人의 뜻에 따라 附葬

된 崔氏夫人의 경우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2. 父子의 埋葬地

그러면 父子 사이의 매장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 자료를 통하여 父子 쌍방의 묘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22개를 조사해낼 수 있었는데, 母子 쌍방간의 위치를 확인한 2개의 사례를 덧붙여 모두 24개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 24개의 사례를 앞의 夫婦의 경우에서 처럼 別葬·附葬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表 3> <父子의 別葬·附葬>과 같다.

<表 3> <父子의 別葬·附葬>

時 期	高麗前期	武人執權期	高麗後期	高麗末期	合 計
別 葬	3	4	2	3	12
附 葬	2	0	3	7	12

이 <表 3>을 보면 別葬은 12개, 附葬은 12개로 서로 꼭 같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려전기와 무인정권기에는 別葬이 더 많지만, 고려 후기를 지나 말기가 될 수록 附葬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앞서의 夫婦의 매장지와 아울러 살펴보면, 고려 후기가 되면서 夫婦·父子가 동일한 지역에 매장되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가 되면 父·妻·子가 동일지역에 附葬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며, 이에 따라 적어도 家族 단위의 매장도 성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族墳>의 형성

앞서 <表 1>에서 제시한 바 있는 263개소의 매장지를 각 家門 別로 조

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즉 高麗 前期나 武人執權 期 동안에는 <表 2>와 <表 3>에서 본 것과 같이 夫婦 혹은 父子 간에 동일한 지역에 附葬되는 경우는 간혹 나타나지만, 父·子·孫 등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동일한 묘역에 매장되는 경우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坡平 尹氏의 경우

① (尹彥頤) … 庚午(毅宗 4, 1150) 四月十四日 葬骨于臨江縣龍鳳山崇福寺東麓乃王父侍中文肅公(尹瓘)陵寢一境內也(尹彥頤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23)

② (尹宗諤) … 葬于松林縣□南山之麓(尹宗諤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83)

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尹瓘과 그의 子 尹彥頤, 그리고 尹彥頤의 孫 尹宗諤에 이르는 묘지를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尹瓘과 尹彥頤는 臨江縣의 같은 지역에 附葬되고 있지만, 尹宗諤은 松林縣에 묘소를 정하였다.

또 仁州李氏의 경우

① (李頤) … 考諱子淵 … 葬于臨津縣白嶽近先塋(李頤 墓誌銘, 『朝鮮金石總覽』 上 pp. 280~282)

② (李軾) … 曾大父子淵 … 大父頤 … 父資孝 … 葬于牛峰郡義龍山之東麓(李軾 墓誌銘, 『韓國金石文追補』 p. 140)

③ (李應璋) 火燬于松林境內柘洞山麓 移骨權安于梵福寺 … 葬于京城西福城寺南山之下 … 軾 皇考也 … 資孝 王父也(李應璋 墓誌銘, 『朝鮮金石總覽』 上, pp. 394~395)

의 기록이 있어, 李子淵과 子 李頤, 李頤의 孫인 李軾과, 李軾의 子 李應璋의 묘소를 찾아볼 수 있다.²⁵⁾ 그런데 李子淵과 李頤은 함께 臨津縣 境內에 附葬되었으나, 李軾과 李應璋은 牛峰郡과 開城에 각각 別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高麗 前期와 武人政權의 시기에는 한 가문이 동일한

24) 坡平尹氏의 가문에 대하여서는 朴龍雲, 「高麗時代의 海州崔氏와 坡平尹氏 家門 分析」—高麗 貴族家門 研究(1)—, 『白山學報』 23, 1977, pp. 140~153 참조.

25) 仁州李氏 가문에 대하여서는 특히 李萬烈,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韓國學報』 21, 1980, 참조.

지역에 계속하여 묘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그리고 다음의 사료는 특히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任益惇) 明年(高宗 14, 1227) 三月二十三日 因得暴風而卒 … 噫 我國無宗阡祖陌族墳之法 各占地而藏之 故今亦卜吉于開州黃桃原 以永厝焉(任益惇 墓誌銘, 『朝鮮金石總覽』上 p. 455)

즉 任益惇은 高宗 14년(1227)에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高麗에는 「宗阡祖陌族墳之法」이 없었으며 각자 占을 쳐서 墓地를 정하였으므로, 任益惇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葬地를 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史料야말로 武人政權 기간까지도 한 가문의 집단 묘지, 즉 「族墳」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高麗 後期가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바뀌게 되었다. 즉 이제 부터는 한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지역에 묘지를 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茂松 尹氏 가문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尹諧 字康哉 茂松縣吏 登第 調尙州司錄 … (忠烈王 33, 1307) 卒 年七十七 … 子守平 守平子澤(『高麗史』106 尹諧 傳)

② (尹)澤 字仲德 三歲而孤 … 忠肅四年(1317)登第 … (恭愍王)十二年 又加贊成事致仕 明年疾作 乞歸錦州 以山水自娛 居七年卒 … 子龜生(『高麗史』106 尹諧 傳附 尹澤 傳)

③ (尹)澤 … 窆于大夫人之墓側(尹澤 墓誌銘, 『牧隱集』17)

④ 文貞(尹澤)之祖先墳墓 在錦者七所三司 … 及文貞卒葬 夫人過哀 盡喪禮 洪武辛酉(禔王 7, 1381) 冬十月壬戌以病歿 年六十五 壬寅 葬于錦之南山文貞公之塋之右(尹龜生 妻 崔氏 墓誌銘, 『牧隱集』19)

⑤ 尹龜生 … 累官判典農寺事 退居錦州 … 子昌宗·紹宗·會宗(『高麗史』121, 尹龜生 傳)

이 尹氏 가문은 ①에서 보듯이 茂松縣吏였던 尹諧가 科擧에 급제함으로써 중앙의 귀족계층에 편입되었다. 이후 그의 家系는 위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尹守平—尹澤—尹龜生—尹紹宗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⁶⁾ 그런데 이 가문의 인물 중 위의 사료에 의하면 尹守平의 妻·尹澤·尹龜生의 妻 崔氏夫人이 모두 錦州에 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史料⑤에는 尹龜生이 錦州에 은퇴하여 있었으며, 史料④에는 尹澤의 祖先의 墳墓가 錦州에 있는 것이 「七所三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쩌면 尹譜 이하 尹龜生에 이르기까지의 尹氏 가문에 속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錦州에 墓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즉 族墳이라고 불러도 좋을 집단 묘역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문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이 시기가 되면 이제 高麗社會에는 지배층들의 族墳이 완전히 形成되어 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²⁷⁾

그리고 이러한 族墳은 그 이전의 시기에서와 같이 「占」이나 「土俗陰陽家」의 방식에 의존하여서는 形成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보다는 새로운 喪法에 의하여 가능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그 喪法은 다음 사례에서 보듯이 바로 儒敎—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시 도입되기 시작하던 性理學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尹澤)前子孫而訓之曰 吾正獻(尹譜) 興廢地 以清白忠直 名一時 吾先君(尹守平) 不幸早世 吾夙夜不克繼志 是懼誤爲上知 龍祿過望 年逾八旬 此皆先世潛德 正獻清白之所遺也 若等其守之 毋墜 我且死 葬毋拘忌用浮屠法 毋侈(尹澤 墓誌銘, 『牧隱集』17)

즉 尹澤은 임종 직전 子孫들에게 유언을 내리면서 葬禮에 있어서 사치

26) 尹紹宗의 傳記는 『高麗史』 120에 立傳되어 있다.

27) 高麗 後期에 접어들면서 茂松 尹氏가문 이외에도 동일한 지역 內에 같은 가문 출신의 인물들의 묘소를 정하는 일이 특히 많아진다. 예컨대 竹山 朴氏의 경우 朴全之, 그의 妻 崔氏夫人, 朴全之의 子 朴遠, 그의 妻 洪氏夫人이 모두 開城의 三郎山에 墓所를 정하고 있다(金龍善, 「新資料 高麗墓誌銘 17點」, 『歷史學報』 117, 1988. pp. 159~166 참조). 또한 光山 金氏 가문의 金台鉉과 그의 妻 王氏夫人, 그의 子 金光載도 모두 德水縣에 묘소를 정하였다(앞의 글, pp. 147~152 참조). 彥陽 金氏인 金胙, 그의 子 金倫, 金倫의 妻 崔氏夫人도 모두 松林縣의 大德山에 매장되었다(전거 생략). 이러한 사실들은 곧 이 시기에 「族墳」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보아 좋지 않을까 한다.

하게 하지 말 것이며, 佛敎의 방식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한 당부는 바뀌 말하면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性理學의 이념에 의한 喪禮 절차를 요구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尹龜生 贊成事澤之子 累官判典農寺事 退居錦州 立祠宇 以朔望四重俗節 祭三代 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一用朱文公家禮 考妣祖考妣墓 立石誌其忌日 又於考墓立碑 墓南作齋室 刻高曾以下忌日于石 俾後世不忘(『高麗史』121 尹龜生 傳)

즉 尹澤의 子 尹龜生은 祠宇를 세우고 칠따라 先祖 및 三代를 제사하는 등 철저하게 朱文公家禮에 의거한 喪禮法을 준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族墳의 形成 과정에 있어서, 三代를 제사하는 등의 朱子家禮의 보급은 자연스럽게 서로 포리관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²⁸⁾

그리고 이러한 族墳은 당연히 그들의 世居地나 鄉里 부근에 세워졌을 것이므로, 後期에 들어서면서 邑節에서 본 바와 같이 高麗支配層의 분묘의 위치도 당연히 地方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V. 맺는 말

지금까지 高麗시대 지배층들의 매장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 前期에는 開城과 京畿지역에 지배층의 묘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武人執權期가 되면서부터 鄉吏로부터 중앙귀족으로 立身해간 계층 가운데 京畿가 아닌 다른 地方에 墓地를 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高麗後期가 될수록 점차

28) 『高麗史』117. 鄭夢周 傳에는 「時俗喪祭 專尙桑門法 夢周始令士康 倣朱子家禮 立家廟 奉先祀」라고 하여 鄭夢周가 처음으로 朱子家禮를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고려 후기에 보급된 朱子家禮에 대하여서는

① 稻葉岩吉, 麗末鮮初に於ける家禮傳來及び其意義, 『靑丘學叢』23, 1936.

② 朱雄英, 家廟의 設立背景과 그 機能—麗末鮮初의 社會變化를 중심으로— 『歷史敎育論集』7, 1985 참고.

심화되어서 鄉吏 출신 뿐 아니라 중앙귀족 출신 계층 가운데에도 은퇴 후 落鄉하여 사망하고 그곳에서 매장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즉 지배층의 매장지는 전국 어느 곳이나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高麗시대의 지배층의 사회적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세력의 기반도 점차 地方으로 확대해 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高麗 前期와 武人執權期에는 夫婦 혹은 父子 간에 따로 묘소를 장하는 別葬이 보편적이었으나, 後期로 가면서 合葬되는 경향이 우세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가문이 동일한 지역에 매장되는 族墳이 형성되었다. 특히 朱子家禮의 보급은 族墳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주었다. 즉 高麗 후기의 지배층들은 前期에 비하여 在地勢力化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이 도입된 性理學的 喪禮法을 적극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배층의 埋葬地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지배 계층이 '초기에는 近畿지방 출신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武人政權期 이후 鄉吏 출신의 士大夫세력이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려의 지배계층의 사회적 기반이 차츰 지방으로 넓혀져갔다'는 기왕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 내려진 이와 같은 결론은 비록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나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고려사회를 보다 다채로운 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